

= 사하구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8. 6. 12 ----- 사하구청장
- 나. 회 부 일 자 : 2008. 8. 29
- 다. 상 정 일 자 : 제162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08. 9. 9)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박노선 기획감사실장)

가. 제안이유

○ 새 정부의 정책방향 등 행정환경 변화에 부응하여 작고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위한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 지침」에 따라 정원을 축소 조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정원의 총수변경(안 제2조)

구 분	계	집행기관 정원	의회사무국 정원
현 재	729명	713명	16명
조 정	698명	683명	15명
증·감	감 31명	감 30명	감 1명

○ 한시정원인 직급별 정원삭제(안 제3조의2)

3.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제 112조)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본 조례 개정안은

새 정부의 정책방향 등 행정환경의 변화에 부응하고, 작고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위한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 지침(2008. 5. 1)」이 통보됨에 따라 우리 구 정원을 축소 조정하려는 것으로

나. 정원조정의 기본방향은

구 전체 인력감축계획에 따라 기관별, 부서별 정원을 재조정한다는 방침아래 정원조정의 기준은 행정여건, 행정수요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면서 한시인력을 정리한 것임

다. 실제 정원조정 내용을 살펴보면

전체적으로는 행정안전부의 권고안대로 총정원의 4.2%인 31명을 감축하였고 (729명→698명) 기관별로는 집행기관의 정원을 713명→683명으로 30명 감축하고 구의회사무국 정원을 16명→15명으로 1명 감축하였음.

라. 이러한 정원 감축은

부산시 16개 구·군 평균 감축율 4.4%에 비해 다소 낮은 수준이나 우리구는 성장가속 지역으로 현안업무가 많을 뿐 아니라 행정대상의 핵심요소인 인구도 대규모APT 입주 등으로 증가 요인을 내재하고 있어 이번 정원감축으로 앞으로 인력운영에 다소의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마. 본 조례 개정안 부칙에

「이 조례 시행으로 감축되는 공무원의 정원에 대하여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 초과현원이 이 조례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는 경과조치를 두고 있어 정원감축에 따른 업무차질과 초과현원 관리에 따른 마찰요인은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예상되며, 조례 시행일은 그동안 심의보류 기간을 감안하여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 론 요 지 : 없음

7. 심 사 결 과 : 수정의결

붙임 : 수정안 대비표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대비표

개정안	수정안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p> <p>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u>2008년 7월 1일부터</u> 시행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p> <p>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u>공포한 날 부터</u> 시행한다.</p>

※ 여타부분은 개정안과 같음